

건설 재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국가 기관 운영에 따른 연구

- A Study on Constrution disasters prevent
of effective govemment authorities -

장 봉 정 *

강 경 식 **

1.서론

건설공사는 더욱더 대형화, 대도심화, 초고층화 되고 있는 반면 미숙련자, 노령화, 여성근로자 증가와 최근 들어 대구지하철,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행주대교, 구포열차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역시 산업안전보건행정 조직의 축소 개편, 산업안전보건규제의 완화 및 자율 재해예방활동에 형태로 강제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으나, 각종 법령에 의한 중복규제 및 대외기관의 과도한 지도점검등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처벌과 규제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현장 지향적인 접근을 통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현실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정부기관의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건설안전협회의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미흡하고, 특히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공공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 3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연구를 통하여 향후 국가 재난과 건설재해예방 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삼성물산 건설

** 명지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

2. 연구내용 및 방법

건설관련 근로자 안전사고 및 대형 기술사고의 연속성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귀중한 생명과 국가재산 피해등 사회불안과 경제발전을 저해로 이어져 왔다. 국가의 모든 재해예방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모순을 개선,보완의 필요성 연구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연구 개발이 필요함과 동시에 안전보건 관련 3대기관의(노동부,안전공단,건설안전협회)현행 업무개선과 제도 보완 하도록 연구했다. 특히 현재 우리기관의 문제점과 다원화되어 있는 관련법령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우수한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3. 건설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국내실태와 선진국 안전기관의 사례

3.1 건설안전의 종합적인 실태

건설공사는 더욱더 대형화,대도심화,초 고층화 되고 있는 반면,미숙련자,노령화,여성 근로자 증가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 동안 정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교육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으나,각종 법령에 의한 중복 규제 및 외부의 과도한지도,점검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처벌,교육,규제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현장 지향적인 접근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현실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노동부/공단/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3.2 우리나라 각 기관의 안전실태

안전관련업무의 복잡화 현재 국내 정부 부처별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활동과 민간기관의 독립적인 안전활동으로 연계성이 미흡하고 복잡하다 .그러므로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정부 부처간의 안전관련 업무부분 통폐합 및 업무관련 신설기관 설립 및 기존 기관 변환이 필요하다.

<표 1 우리나라 안전관련 기관 현황(관,민포함)>

| 구 분 | 등 록 현 황 | 비고 |
|--------------------|---|----|
| 안전진단민간기업 | -건설교통부2002.06월 현재 등록갯수 317개사 -말소:56개사,영업정지:20개사,휴업:5개사,취소9개사 | |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건설공사:35개 법인 (38개 지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3개법인(7개지부) | |
| 노동부(제조/건설) | - 노동부 산업안전국 체제 6개청 45지역사무소 | |
| 한국산업안전공단 | - 노동부 산하기관 체제 공단본부 외 3개 지역본부 16개지도원 3개사무소(강릉,양산,제주),연구원,교육원 | |
| 한국건설안전협회 | - 사단법인 체제 본부 외 5개 지역 사무소 | |
| 정부 부처별 | - 정부 부처별 독립적 안전관련 업무 부서 | |
| 대한산업안전협회 | -협회본부 외 개 지역 지회,건설안전지원국 | |
| 대한산업안전대행 | -제조분야의 안전대행 협회 본회 외 개 지역(독립체산) | |
| 교육기관/학회 | - 공단교육원,협회교육사업,대학안전보건관련 학과/학회 | |
| (사)보호구협회 한국가설협회 | - 제조 및 건설 보호구 제조 26개 회원사 - 가시설 산업(제조/건설) | |
| 언론단체,잡지 | - 매일경제신문사 ,무재해 신문사 외 약15개사,인터넷 | |
| 민간단체 협의회 | - 안전관리자모임,안전기술사 모임,민간기업 안전협의회 | |

3.3 외국기관의 안전관련 사례

3.1.1 미국

연방법인 OSHA에서 안전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음. 단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사 혹은 근로자의 진정에 대한 사실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1)시공 안전에 대하여는 구조물 허가 시 건설계획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고,심사와 검증을 받음.
- 2)민간 산재보험 회사에서 사업장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고 보험 요율을 협상함으로써 자율 안전관리 유도

3.1.2 일본

건설공사에 대하여 유해방지계획서 심사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국내 산업안전보건 법과 유사 하나 대규모 또는 특수공사에 한정하고 있고 구조물 공사의 안전에 대한 규제는 없음

*안전관리비 요율 등은 건설성에서 지침으로 시달하며,안전관리비 활용은 전적으로 시공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재해발생시에는 안전관리비 사용처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함.

3.1.3 영국

CDM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공사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걸친 일관된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발주자, 안전 감독자, 설계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각각의 공사 참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준행토록 규제

3.1.4 EU연합

안전관리 제도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EU규범등에 따라 안전보건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안전보건 코디네이터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검토, 자문, 지도, 감독하며 책임을 짐

4. 국내 안전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

4.1.1 종합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 1) 대형 국책사업은 EU의 안전 코디네이터 즉 종합안전관리자 선임
- 2) 건설 안전 기술사 소자자로 경력 10년 이상

4.1.2 기술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 1)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실업계 공업고등학교 및 대학의 안전관련학과 확충
- 2) 실업계 공업고등학교 및 대학의 시공과정교과목에 안전관리 과정을 포함시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4.1.3 안전청 신설

각 부처 안전관련법을 정비하고 통합하여 업무 시행

4.1.4 시장의 자율적 규제 촉진

건설사업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고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 등 공사 참여자간에 책임과 권한의 적절한 분산이 필요

4.1.5 법, 제도 규제의 한계성

그 동안 정부의 법, 제도 적용이 관주도의 사전 규제나 처벌위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산업재해가 일정 부분 은폐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대책은 대부분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강화, 외부기관의 점검, 지도 강화 등 상위 지향적이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 지향적인 안전 대책이 되도록 연구해야 함.

4.1.6 안전 감리원 의무 채용제도 도입

1) 감리원의 안전관리업무 실태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활동의 지도, 감독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그리고 중소현장의 경우는 개해예방전문기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안전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특별 목적 점검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이란 가변성이 심하고, 인력의 이동이 빈번하다 즉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항상 동적인 특성이 있으며, 기술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성은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에 상주하여 매일같이 시공과정에서 일상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는 사용자와 고용자로 구성되어 제조업과는 달리, 건설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의 모든 시공과정을 직접관리, 감독하는 공사감리자 (또는 발주기관감독관)가 있다.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안전 관련기준 등을 정부에서 마련 지원하고 현장점검은 우리나라와 달리 발주기관 및 감리자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의 건설생산 체제하에서 시설물 및 근로자의 안전관리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행하나 감리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권한 대폭 강화.

2) 감리원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한계

현행 법규상 시공과 감리는 명확한 업무연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 그 문제점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안전사고발생시 시공자에게 일차적 책임은 있으나, 책임감리 제도하에 감리자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다
- ② 감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참여 의식이 미흡하고 문제발생시 감리자 역할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 ③ 감리자의 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비용이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못하여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다
- ④ 감리업무 과다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감리자의 참여가 사실상 곤란
- ⑤ 감리원 안전업무 미 경험으로 시공사의 잦은 마찰(자격 미소지)
- ⑥ 안전 감리원은 100%겸직으로 공사 감리중 감리단장이 지정

이에 따라 현재 감리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직접참여하기 보다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계획서 검토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 따라서 감리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안전관리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시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담안전감리원제 도입이 시급하다.

3) 전담 안전 감리원 시행시 책임 및 권한 강화 방안

감리회사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도입하여 건기법에 의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감리용역 계약시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감리자의 역할을 구체화하면 안전사고예방이보다 향상될 것이다. 현재 건기법에 의한 안전계획서만 검토하고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고 안전 관리비에 대한 사용실적을 받아 인정해 주는데 법 해석에 따른 마찰이 발생되고 시공사의 고통만 부담(노동부점검과 감리원의 해석차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담안전 감리제도 도입 후 안전교육 미이수자 안전관리 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관리직 및 기능공을 현장에서 철수시킬 수 있는 권한과 현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해 근로자 의무사항을 위반시 노동부 감독관이 부여하는 권한도 인정

4) 전담안전감리원제도 도입시 보완 사항

전담안전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외부기관에 의한 의무적인지도,점검은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감리자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감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은 노동부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현장 감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는 새로운 규제사항을 창출함으로써, 안전교육 필요시 자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기사 및 기능사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이 불분명해 질 경우, 자격 취득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안전관리 자격취득자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분야 전담감리원으로 일정 부문 흡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

5) 건설안전 관계 법령의 통폐합

안전관련 업무의 복잡화로 현재 국내 정부부처별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 활동과 민간 기관의 독립적인 안전활동으로 연계성이 미흡하다. 건설안전관련 규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 기술관리법>에서만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의 건설관련 법령에서도 다양한 안전관련 규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규제를 통폐합하여 단일 법령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건설공사의 안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크게<건설 기술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산업안전보건법>을 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되는 법령으로는<주택건설촉진법><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등이 있다. 이와 같이 시설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고, 근로자의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건설공사에 있어서 근로자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건설구조물의 안전관리는 계획,설계에서 시공,그리고 준공 후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과정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특히 이 과정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진행되는 지와 각각의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제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종합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관련 제도가 건설교통부의 <건설 기술관리법>과 노동부의<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원화되어 다수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하나로 통.폐합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를 재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첫째 정부 부처간의 안전관련 업무부분 통폐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로 통폐합 업무관련 신설기관 설립 및 기존 기관 변환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 . 건설현장 안전관련 법규 기준 및 관리부서 >

| 관리부서 | 법규 및 기준 | 비고 |
|-------|--|----|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축법,도로법(도로구조령),하천법,도시계획법,건설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및 기준,교통안전법,건설기계관리법 | |
| 노동부 |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법 | |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대기보존법,소음.진동규제법,수질환경보존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하수도법 | |
| 산업자원부 | -전기공사사업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광산보안법,액화석유가스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행정자치부 | -소방법,총포,화약류단속법,도로교통법,자연재해대책법 | |
| 중소기업청 | -산업표준화법,계량 및 측정에 관한법,공산품품질관리법 | |

5. 안전보건관련 기관별 제도적 개선 및 보완

5.1.1 노동부

1. 현장 종합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 * 대형공사 위주로 안전 기술사 선임/경력구분

2.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폐지에 대한 시범운영

- * 안전은 공사의 필수 기준으로 인식전환 필요
- * 안전관리비 폐지 후 사법권 강화(자율안전유도)

3. 현장 안전지도점검 근로감독관 제조/건설분리

- * 건설현장 근로감독관 건설관련기술직 운영

4. 전담안전감리원제도 도입

*대형 SOC사업 시범 운영 후 점차적 확대

5. 현장지향적 대책의 수립

*실효성이 낮은 사후 처벌 강화, 안전관리 법령의 적용대상 확대 등과 같은 상위 지향적 대책, 혹은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업태의 신·증설 등을 지양하고,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6.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대부분의 규제는 폐기 또는 크게 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필요한 규제로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들 수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로는 교육, 처벌, 외부점검 등을 들 수 있다.

7. 중소기업현장 위주의 점검 강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대기업 현장보다 오히려 중소기업 현장 및 하도급 공사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현재로서는 중소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취약하다. 따라서 건설안전 정책을 현행 대형 사업장 중심에서 중소 건설현장 위주로 바꾸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1.2 한국산업안전공단

1. 안전 검사, 검정, 인증 업무의 활성화

* 기업의 피난처/보험료 할인 등으로 선호

2. PL 분쟁의 한 당사자로 책임성 증대

* 업무수행 중 과실 있을 경우 : 피소가능성 증가

3. 안전보건기준 등에 대한 질의, 해석요청 민원증가

* 불명/모호한 기준의 개정 필요성

4. 분쟁 산업설비의 결함유무 확인에 관한 요청증가

* 안전전문기관으로써 PL Net Work에 참여 필요

5. KOSHA Code의 역할 및 기능 증대

6. PL관련 주무부서 결정/명시, 인력보강 및 체계적 대응

- 정보자료수집, 분쟁대비 및 전문가 육성
- PL 전문기관 Net Work 구성 및 역할증가에 대비
 - * 사업장의 42%는, 분쟁 시 공단의 공정한 중간자 역할을 기대

7. 산업설비 제조업체의 제품안전 향상지원

- PL정보자료 제공 - 중소기업의 PL대책지원 서비스
 - * 사업장 68%가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을 희망
- 설계 담당자 교육 등 실질적 실천 프로그램 신설(32%가 희망)

8. 안전/보건기준 및 KOSHA Code의 전면적 검토

9. 사례, 국내외 동향파악 등 지속적 조사

10. 안전공단의 안전청으로 전환

- 근로자 안전에서 공공안전 확보
- 정부 각 부처별 난립된 안전관련 업무 통폐합으로 단일성 추구
- 전국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공공안전성 점검
- 안전공단 안전청전환시 공단업무 선별적 이관(건설안전협회) 연구 필요
- 미래의 예상 정책수요에 대비

5.1.3 한국건설안전협회 개선방향

1. 연구 및 진단기술 개발 활성화

- 해외 선진국 진단기술 도입 및 자체개발 연구
- 진단기술개발 성과에 따른 기술력 우위

2. 안전보건관련 업무에 대한 참여 확대

- 현행 구조물 진단관련 영역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영역 확대(필요시 기업진단 컨설팅 실시)

3. 안전보건교육 기관 내실화

- 안전공단교육원 교육과정의 건설안전전문 교육 기관으로 전환
- 협회부설 건설전문교육기관 설립
- 해외 건설안전보건 관련 세미나 유치(분기별/반기)

4. 연구조직 신설(안전/품질/환경)

- 안전보건 정보 자료 수집 발간(해외/국내)
- 건설 PL분쟁 대비 및 전문가 육성 및 컨설팅 업무
- 건설기술사고 예방에 따른 건설기술(공법)연구
- 건설품질에 대한 연구 및 품질인증 대행
- 건설공사의 건설공해 발생에 대한 대책 연구

5. 각 시,도 지자체 안전관련 업무 위탁 대행

- 지자체별 관리주체와의 시설안전관리 위탁 대행 업무

6. 유락시설 안전진단

- 민간 유락시설 안전진단

7. 영업조직 신설

- 영업조직구성으로 수주물량 확대

8. 해외 진단기관 업무 교류 및 해외 사업 추진

- 해외 진단기술 도입
- 상대적 기술력 낙후된 동남아 지역 시장 저변확대

9. 협회 회원관리 개선

- 회원관리 미흡에 따른 민원증가로 불신감 팽배
- 다양한 회원서비스로 신뢰도 회복

10. 건설사업관리 분야 진출(C.M)

- 향후 건설사업분야 변화에 대응(C.M사업부 신설)
- 국내 해외 사업관리분야 진출 증가
- 민간사업에 CM적용 강제성 부여(민간에서 CM제도를 먼저 발전)
- C.M안전관리분야 활성화 방안 수립
- 협회 C.M사업부 신설

11. 경영혁신추진

- 협회 경영전반에 대한 혁신필요
- 현행 건설안전협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한 건설안전관리분야 대한 진단,교육,컨설팅,사업관리,재해예방,영업 등 사업분야에 대한 향후 발전 가능한 사업분야는 확대하는 방향 설정으로 경영혁신 추진

12. 업무추진계획 단절

- 협회특성상 회장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비합리성
- 협회장의 업무 연속성 결여
- 부회장체제 직속 자체 경영혁신팀 신설

13. Risk Management기법 도입으로 경영효율 증대

- 현행 건설안전협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각 부서별 연간 업무에 대한 Risk를 분석하여 대책수립
- 분석에 대한 대책은 관리적, 기술적, 교육적 대안으로 작성(분석기법의 다양성)

14. 협회홈페이지 개선

- 현재 일관 민간운영 홈페이지 이용자 보다 매우저조
- 다양한 안전정보자료 미흡
- 국내 最古,最大의 건설안전 Safety Site Enc을 운영하여 안전정보 자료를 최대한 제공

15. 전문 안전 감리부 신설

- 대형 국책사업 발주시 책임 감리분야 안전부문 위탁 업무 수행
- C.M 사업무 신설시 포함된 조직으로 가능

6. 결론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을 제·개정하여 왔는데, 현재 각 법령 간 많은 부분이 중복으로 규제되는 불합리성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서의 각종지도·점검 등이 과다하여 오히려 안전관리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복된 안전관리 규제를 빠른 시일내에 일원화하고,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또한 정부 부처간의 이익을 추구한 정책은 사업장의 중복규제로 안전사고의 유발요인과 생산성 저하로 연결 될 것이다.

국가의 안전정책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이 다양한 해석 방법으로 사업장의 안전정책을 지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에 의문점이 있다. 각 기관의 안전활동이 지나친 실적 위주의 지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례화되어 있는 행사성 안전정책이 진행됨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과 정책의 이행상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다.

현행 안전관련 기관 등의 활동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오히려 관 주도형이 아닌 민간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거나 정책의 잘못된 판단으로 제각기 판단한 업무활동의 부작용도 나타난다. 이 기관들의 관리감독 기능도 미흡한 현실을 감안할 때 관련 법집행 기관은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안전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관련기관은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정착되도록 해야하며 특히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건설안전협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하며 과감한 제도 개혁과 신설 등으로 공공안전과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 현행 근로자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을 주도적으로 지도·감독하는 3대 기관의 역할을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재해예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국가기관의 3대기관인 노동부, 안전공단, 협회의 제도개선과 신설 등으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정책집행기관의 실증적인 연구분석은 추후 연구 과제로 한다.

7. 참 고 문 헌

- [1] 성호경, 김병석, 전운기, 최신산업안전보건법 해설, 형설출판사, 2000.
- [2]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 대형기술사고 사례집 발췌 1999년
- [3]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연구원 연구원지 1999.12월호 통권 2호
- [4]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연구원 연구원지 2002.3월호 통권 3호
- [5]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규제개혁위원회 토론회 주제발표 논문, 1998.7.8(최민수)
- [6] 한국산업안전공단 업무 목표 및 기구조직 현황 2002, 11
- [7] 한국건설안전협회 업무현황 및 기구조직 구성 현황 2002, 11
- [8] 삼성화재 위험관리연구소 사고예방논문집 1998.5
- [9] 건설안전기술원 월간지 2002, 7월호 발행인 김병학
- [10]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건설기술관리법, 화약법, 고압가스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관리특별법 법령 전문